

## 제 1 장 관세법 개설

### 제 1 절 개 설

- 우리나라는 1949년 관세법<sup>1)</sup>을 제정하였으며,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 및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 특히 1995년 WTO의 출범으로 국제무역환경질서가 크게 변화됨에 따라 수출입통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였고, 수입자유화를 증대하였고,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하였다.<sup>2)</sup>
- 무역은 재화와 용역의 분배를 가능하게 하고, 국제분업을 촉진시켜 고용 및 생산증대를 가져오고, 문화와 정치적 교류도 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생활을 향상시킨다. 한편, 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수입 보다는 수출을 통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반면, 수입은 규제하려고 한다. 수출지원에 대한 대표적인 수단이 수출보조금지원이며, 수입에 대한 규제 중에서 대표적인 수단은 관세제도이다.
- 한편, 지나친 무역장벽은 세계적으로 무역의 감소를 초래하여 결국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바, 세계기구에서는 이러한 무역장벽의 제한 또는 철폐를 통하여 무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47년에는 체결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f Tariff and Trade : “GATT”)’에서는 관세장벽과 수출입의 제한을 철폐하고 무역과 자원의 교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또한,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는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감축, 정책적 협조 등을 통해 완전한 자유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GATT의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을 개선하였으며, 세이프가드협정을 새로 제정하였다.<sup>3)</sup> 우리나라도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2001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sup>4)</sup>을 제정하였다.

#### ☞ 관세법의 목적

---

1) 법률 제67호, 1949.11.23, 제정[시행 1949.11.23].  
2) 김상만, “불공정무역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탄력관세제도에 관한 소고”, 서울시립대, 조세와 법, 제5권제1호, p.43.  
3) 이제홍, “불공정무역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반덤핑관세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4호, 2010, 110면.  
4) [법률 제6417호, 2001년 2월 3일자 제정, 2001년 5월 4일자 시행].

○ 대외무역법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법 제1조)

- ① 관세의 부과 및 징수
- ② 적정한 수출입물품의 통관
- ③ 관세수입 확보
- ④ 국민경제발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절 관세의 의의 및 분류

### 1. 관세의 의의

- 관세란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 관세선이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추상적인 기준선으로서, 정치적인 국경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2. 과세목적에 의한 분류

#### (1) 재정관세(Revenue Duties)

- 재정관세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관세의 1차적인 목적은 재정수입의 확보이다.

#### (2)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

- 보호관세는 국내의 유치산업의 보호육성 및 기존산업의 유지 등을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내판매가격이 인상되어 국내물품의 가격경쟁력이 유지된다.

예) 덤핑방지관세(상대국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출시 부과), 상계관세(상대국의 보조금지원시 부과)

### 3. 과세방법에 의한 분류

#### (1) 종가세(Ad Valorem Duties) : 관세부과의 원칙

-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액을 산정한다.
- 현행 관세율표는 대부분 종가세로 하고 있다.

○ 관세액 = 과세가격 × 관세율 예) 수입가격(CIF기준) \* 관세율 (관세법 제302조)

## (2) 종량세(Specific Duties)

-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관세액을 산정한다.
- 현행 관세율표상 종량세대상은 영화용 필름과 비디오 테이프이다.
- 관세액 = 수량 × 단위수량당 가격(세액)

## (3) 단일세와 혼합세(Combined Duties)

○ 종가세와 종량세의 장점을 서로 결합하여 과세의 효과를 최대로 하는 관세를 말한다.

### ① 단일세(Single Duties)

- 단일품목에 대하여 하나의 세율만을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종가세, 종량세)

### ② 혼합세

- 선택세(Alternative Duties) : 한 품목에 대해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을 동시에 정해 놓고 그 중 높은 관세액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 복합세 : 하나의 품목에 대해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정하여 이것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 4. 과세의 성격에 따른 분류

### (1) 특혜관세

○ 특정국가와 통상확대를 위하여 특정국가의 수입물품에 한하여 부과하는 할인관세를 말한다. (예 : FTA체결국에 대한 특혜관세)

### (2) 탄력관세

○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관세는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서 관세정책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부에서 탄력적으로 관세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제 3 절 관세법상의 용어의 정의

### 1. 수출과 수입(관세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관세법 제2조)**

**1) 외국물품**

-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
-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③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 ④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 중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 물품의 생산지와 외국물품
    - 외국생산품 : 수입신고 수리전의 것
    - 국내생산품 : 수출신고 수리후의 것
    - 공해상에서 채취한 수산물 : 외국선박이 채취한 것
  - ☞ 우리나라의 범위
    - 우리나라의 영토 범위는 북한도 포함되며(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영해는 12해리까지 인정하는 것이 국제관례

**2) 내국물품**

-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 ③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 ④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 ☞ 물품의 생산지와 내국물품
    - 외국생산품 : 수입신고 수리후의 것
    - 국내생산품 : 수출신고 수리전의 것
    - 공해상에서 채취한 수산물 : 한국 선박이 채취한 것

**3. 외국무역선(기), 내항선(기) 등**

- 1) 외국무역선 :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
- 2) 외국무역기 :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
- 3) 내항선 :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 4) 내항기 :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

- 5) 선용품 :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
- 6) 기용품 :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
- 7) 통관 :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관세사 기출문제 : 2012년 관세법개론)**

1.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①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③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 ④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⑤ 수입신고 중에 있는 물품
- ⑥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각하처분을 받은 물품
- ⑦ 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
- ⑧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물품

(답 ②, ③, ⑤, ⑦)